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2. 18.(화) 06:00 < 2. 18.(화) 석간 > 배포 2025. 2. 17.(월)

첨단기술 고시 전면개정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18.(화)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산업·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부 고시)」 전면 개정을 위한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 총괄위원회는 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 35개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분과별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산업부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근거하여 우리 산업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와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할 기술과 제품 범위를 2~3년 주기로 선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로 보호, ▲연구개발특구 입주시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첨단기술 분야 종사 예정 외국인력에 대한 E7 비자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他제도와 비교(예)

①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고용 등 영향을 고려하여 총 17개 기술 지정, 기술의 해외수출 및 M&A 시 산업부장관 승인 필요,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투 보조금 가산, 기술보유기업 상장특례, 기술사업화 융자 등 지원

② 국가전략기술(조세특례제한법): 국가안보 중요성 및 국민경제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총 66개 기술 지정,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원

현재 35개 분야 총 3,091개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기술 보호, 세제, 자금 지원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해 첨단기술 확인 신청 건수가 2020년 168건에서 2024년 3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부 첨단기술 목록에 첨단성이 부족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기술 명칭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신청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9~10월 산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한 233건의 기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 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목록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명칭과 사양을 구체화하는 등 전면적인 기술범위 개정도 추진한다.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된 기술 범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첨단기술 제도는 우리 기업들에게 기술개발 및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라고 강조하고, "최근 첨단기술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술 최신화뿐만 아니라 연계 지원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내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 권 (044-203-4510)
		담당자	사무관	윤지영 (044-203-45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첨단기술 범위 개정 1차 총괄 회의 계획**

1. 회의 목적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 전면 개정 위한 **1차 총괄 회의**, **첨단기술 범위 개선방향** 및 **향후 검토절차** 등 논의

2.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5.2.18(화) 11:30~13:00 /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401호)

○ **(참석자)** 위원장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간사 KIAT 산업기술정책단장, 위원 반도체·자동차·생산기반·우주항공·에너지 등 **주요 분과별 위원장**

3. 주요 내용

○ 첨단기술 개정 방향 및 절차 공유

○ 전문가 의견 수렴

4. 향후 일정(안)

분과위원회	2차 총괄위원회	공청회	3차 총괄위원회	고시 개정
첨단기술·제품 범위 및 명칭 개정 검토	총괄위원회 중간회의	결과물 정리 및 공청회 개최	총괄위원회 최종회의	첨단기술 범위 개정 완료
3월	4월	4월	5월	6월

참고 2 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제도 개요

□ **(목적)**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산업부는 첨단기술·제품 범위를 고시

> ▪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첨단기술·제품 확인 받은 기업**은 산업기술보호법, 연구개발특구법, 외국인투자법 등에 근거하여 **기술보호, 세제, 입지 등 지원 대상**

* 기술보호(기술유출시 「기술보호법」적용되어 유출자 제재가능), 세제(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법인세 등 감면), 입지(연구개발특구 국공유 재산사용 등 특례), 자금(외투기업 현금지원)

□ **(첨단기술·제품 선정)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을 대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기여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 고려 선정

> ▪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②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 3. 산업 간 연관 효과
>
> ▪ **고시 제2조제1항(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①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 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 **(첨단기술·제품 범위) 35개 분야 3,091개 첨단기술·제품을 고시 중**

* 분야(35개) - 대분류(166) - 중분류(583) - 소분류(1,390) - 첨단기술(3,091)

** 89년 최초 고시 이후 12차 개정('90,'91,'94,'96,'02,'06,'07,'10,'15,'19,'22,'24)

□ **(확인제도 운영)** 기업 신청기술에 대해 고시 **<별표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확인**하여 **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14일내)

확인 신청	▶	신청서 접수	▶	검토·확인	▶	확인결과 통보
-확인 신청서 -기술·제품 설명서		-상시접수(메일) -신청분야 분류		-첨단기술 해당분야 -보유기술 수준/경쟁력 (전문가 자문)		검토의견서 통보 (적합시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		산업기술정책과		기술·제품 소관과		산업기술정책과

참고 3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연계 지원제도(관련법령)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1. 기술보호	**산업기술** (산업기술보호법 §2-1나)	- **산업기술 유출의 벌칙 및 제재**(법 §36) ① 해외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② 국내에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③ 산업기술 유출 행위로 얻은 재산 몰수
2. 세제	**첨단기술기업** (조특법 §12의2①1, 영§11의2①4) * 연구개발특구법上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에 첨단기술 범위 포함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의2②) * 세액공제율 : 최초 3년 100%, 다음 2년 50% -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지특법 §105②)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지방세법 §13②, 영§26①5)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외(법 §13②) * 법 §11에 따른 해당 세율 적용
3. 자금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법 §14의2①2, 5)	-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법 §14의2①) * 공장 및 연구시설의 신설·증설, 연구개발 용도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법 영§31의2①2)	-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자금지원(법 §49①)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법 §2-1, 영§3①4)	-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법 §28①) *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기술평가 등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해외진출기업복귀법 §2-3, 영§3의2)	-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위한 토지매입, 설비투자 금액 등 지원(법 §12)
4. 입지	**첨단기술기업** (연구개발특구법 §9, 영§12의3①)	-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법 §15) ⇒ 수의계약, 분납 허용
	지식기반산업 (산업집적법 §2-8, 영§4의4)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단지조성, R&D, 기반조성, 기술이전·사업화 우선 지원(법 §22의2①) -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법 §22의2⑥)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 입주가능(법 §28의5)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신설·증설 허용(영 §26-2)
	외국인투자지역 (외투지역운영지침 §11-2)	-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대상업종(법 §11-2)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특별법 영§22①2자)	-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법 §165) ⇒ 수의계약, 분납 허용
	해안내륙 투자진흥지구 (해안내륙발전법 영§33①12)	- 입주기업 용매입비 융자, 토지 임대료 감면, 개발사업 자금지원(법 §27①) -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법 §27②) ⇒ 수의계약 허용
5. 비자	**출입국관리법**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 **첨단산업분야 종사 예정자*에 E-7-S2 비자 발급**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 기술분야 종사(예정) 전문인력
6. 구매	**드론첨단기술** (드론법 §13, 영 §14①)	- 시도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사용 요청(법 §13②)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법 §13③)
7. R&D	**산업기술분야** (산업기술혁신법 §11①9)	- 산업기술개발사업(R&D, 사업화) 출연 또는 보조(법 §11②)